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연월일 : 2006. 11. 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폐기물관리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13조의4).
- 나. 폐기물관리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22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2007년도부터 수당 및 여비 실비보상
- 다. 합의 :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6년 9월 8일 ~ 9월 28일/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민지원기금”을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중 “주민지원기금”을 각각 “기금”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구의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국장, 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

설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의5 및 제1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6제1항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주민지원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를 “(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관련 갈등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폐기물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⑩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p> <p>1.~ 7. (생 략) ② (생 략)</p>	<p>제5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1.~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광역 처리시설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3. (생 략)</p>	<p>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 지원기금의 확보)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주민지원기금</u>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4. (생 략)</p>	<p>제13조(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 지원기금의 확보) ①----- ----- <u>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②----- <u>기금</u>----- ----- 1.~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3(기금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13조의4(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주관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구의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주관국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인으로 한다.</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시설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p>	<p>제13조의4(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업무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구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업무 담당국장, 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p> <p>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u>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u>사항</u></p> <p>2.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등에 관한 <u>사항</u></p> <p>3. 기금의 조성 및 운용 · 관리와 <u>결산에 관한 사항</u></p> <p>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 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p> <p><삭 제></p>
<p>제13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u>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u></p> <p>② ~③ (생략)</p>	<p>제13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u>심의위원회</u>-----</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9(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u>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u></p>	<p><삭 제></p>
<p>제15조(주민지원기금과 일반회계와의 <u>관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당해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u></p>	<p>제15조(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 ----- ----- ----- <u>기금</u> -----</p>

현 행	개 정 안
<p>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 <u>주민지원기금</u>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p>	<p>----- ----- 기금 -----</p>
<p><u>〈신 설〉</u></p>	<p><u>제22조의2(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u></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 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규모, 처리 방식 기술검토,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관련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p>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폐기물업무 담당국장은 당연 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p> <p>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u>(9)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u></p> <p><u>(10)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관련법규발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